

[별표 3]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용역명:

2. 공사감리 개요

가. 위치:

나. 용도:

다. 구조:

라.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동 세대

마. 대지면적: m^2

바. 건축면적: m^2

사. 연면적: m^2

3. 공사감리 종류 및 기간

가. 공사감리 종류: ☐ 상주 공사감리 ☐ 일반 공사감리

나. 공사감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금액 : 일금 원정(₩)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5.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계약금액의 ()%

6.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7.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8.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감리업자

상 호 :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 공사감리"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공사감리"란 영 제9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대가는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는 법 제25조

의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공사감리 대가는 계약 금액 및 공사감리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와 감리업자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 고
계약시	W	20%
• • • • •	W	
• • • • •	W	
업무완료시	W	100%
계	W	부가가치세 포함

④ 발주자가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조정) ①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대가의 조정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자는 제공하여야 할 자료의 수집을 감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 현장에 배치한 소방기술자의 인적사항
3.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5. 산재보험가입증서
6. 기타 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감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발주자는 착공 7일전까지 감리업자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감리업자는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업자의 인적 사항을 착공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원의 배치) ① 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자를 대리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이 신체의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확인지도)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의 경우
2. 옥외매설공사의 경우
3. 배관공사의 경우
4. 배선공사의 경우
5. 기타 소방시설의 품질관리상 주요 공정의 경우

제11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① 감리업자는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여부의 확인과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소방시설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자재의 적합성 검토 등) ① 감리업자는 자재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자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 전까지 감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재의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3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등) ① 감리업자는 설계도면의 누락·오류

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감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소방시설의 품질확보, 공사업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감리업자의 시정 또는 보완 등 조치에 따르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리

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소방공사 감리 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감리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감리업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가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감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감리업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감리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강제집행·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감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감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감리업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3. 발주자가 감리업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 변경, 제20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감리업자의 면책사유)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킴으로써 공사감리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업자의 공사 중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공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감리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공사감리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의 정산·환불 및 지불은 제21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24조(다른 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① 발주자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 등 다른 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감리업자가 제4조에 따른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업자가 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 등 다른 공사의 공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보장)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

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감리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